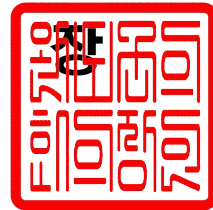


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

「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5년 10월 1일

완 도 군 의 회 의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

2. 발 의 자 : 박 성 규 의원

3. 제정이유

- 「병역법」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완도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,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적용범위(안 제3조)

○ 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(안 제4조)

○ 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(안 제5조)

○ 환수조치(안 제6조)

5. 관련법령 :

6. 조례안예고기간 : 2025. 10. 1. ~ 2025. 10. 10.

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정지원2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(전화: 061-550-5937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8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정지원2팀(전화: 061-550-5937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2. 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안 예고명	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		
의견 제출자	성 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
	주 소		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			
「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」의 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			
년 월 일			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			
완도군의회의회장 귀하			

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병역법」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완도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,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현역병”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(兵)을 말한다.
2. “입영”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(徵集)·소집(召集) 또는 지원(志願)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.
3. “입영지원금”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완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「병역법」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으로 한다.

제4조(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) ① 완도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제3조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영지원금은 「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완도사랑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5조(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) ① 입영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

사람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신청할 수 있으며, 그 신청 기한은 입영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.

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,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, 우편(전자우편을 포함한다),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④ 입영(소집)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직계가족, 형제자매,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

제6조(환수조치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.

1.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
2.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
3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)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